

[긴급] 수원고 신관동 창호교체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명	[긴급] 수원고 신관동 창호 교체 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666-10 수원고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의 착공일	2026. 8.(예정 착공일이며 변경될 수 있음)				
공사규모	신관동 창호 전체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09,521,000	209,521,000	190,473,637	19,047,363	0	269,429,000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총액 견적제출, 전자계약**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시로 우선 제한된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직접임금제**” 적용 대상공사로, 반드시 **하도금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금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붙임3)
- 견적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작성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624,058원	3,467,114원	344,801원	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615,072원	0원	2,889,660원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 구조물·창호·온실공사)**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수원시】**인 업체에 한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정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원고등학교 행정실 (☎행정계장 윤인규 031-300-3231)

5.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견적제출은 전자 견적 제출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8.05.(수) 16:00 ~ 2026.08.11. (화) 10:00
 -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일시 : 2026.08.11.(화) 11:00
- 개찰장소 : 수원고등학교 행정실 집행관 PC
- 본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pm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천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를 89.745% 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공고문 9. 참고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천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견적에 부칠 수 있으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과 일정 기간(3개월)에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시고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 견적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견적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기타 무효 견적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7항 다호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및 사후 정산(A값)

-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가격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3,467,114	2,624,058	344,801	3,615,072	0	0	2,889,660	12,940,705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및 환경보전비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 1건(분할하여 계약할 경우 합산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 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를 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 9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기도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적용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공사 준수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1)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2)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 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붙임2]의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업체(수원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약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
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수원고등학교장 귀하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수원고등학교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본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 .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 학교(기관)명: ○ 업체명: ○ 작업명: ○ 현장책임자: ○ 연락처:	
	□ 계약현황 ○ 계약금액 : ○ 계약기간 :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 안전관리담당자: ○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⑤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 4]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 기관 형태 및 계약의 형태에 따라 변경 가능

학교(기관)명		결재		
평가일시		○○	○○	학교장 (부서장)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내용 및 기준	충족여부 (○,×)	점수
안전보건 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 인력 구성 (10)	-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 안전담당을 배정 시 배점		
	안전점검계획 (10)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절차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 배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20)	-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 배점		
	비상조치 계획 (10)	-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비상상황 시 조치 계획을 수립 시 배점		
실행수준 (20)	위험성 평가 (10)	-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계획 -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시 배점		
	안전보건교육 (10)	-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시 배점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3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배점한도 내에서 재해 건수 1건당 10점 감점 - 산재요양확인서 제출		예시) 2년간 재해건수 0건: 30점 1건: 20점 2건: 10점 3건 이상: 0점
총 점				
등 급 판 단				

※ 고소작업을 할 경우 해당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도급(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 . .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탐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 4) 차량탐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탐승대 안전난간 설치, 탐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